

대고객 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약관 신규조문대비표(2023.10.12개정)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>제 20 조(관할법원)</p> <p>조건부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 20 조(관할법원)</p> <p>① 조건부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문판매 관련 관할법원에 대한 조항 신설</p>